

대학교수와 敎權

劉 載 天
(西江大 新聞放送學科)

대학이 존재하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으나 대학의 목표 추구를 가능케 하고 생동하는 학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하는 여건으로 적어도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교수는 대학의 정책 수립이나 교수 자신의 과업과 성취에 관한 판단과 평가에 관련된 일들에 대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자율적 권한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대학교수의 자율과 권위의 보존은 대학이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둘째, 대학교수들의 교수 기능과 연구 활동은 대학의 기능에 있어 통합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들의 교수 기능과 연구 활동은 도서관, 실험 시설, 연구 조교, 연구 시간 등 물질적 시설면에서나 보상 제도의 측면에서 충분한 뒷받침을 받을 때 비로소 활기를 찾게 된다.

그러나 대학교수의 자율과 권한은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대학이 관료제화 되어 감에 따라 점차 축소되어 왔다. 대학의 정책 결정이 대학내의 행정가나 정부와 같은 교수 직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대학의 전문적 자치와 권위는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대학에서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보다 특수한 여건이 개재되고 있어 더욱 심화된 상태라 할 수 있겠다. 즉 우리의 경우 정부기관(문교부)의 대학에 대한 간섭은 광범위하고도 세부적이며, 사립대학에 있어 설립자의 영향력은 제왕의 권한에 견줄 만큼 크다. 대학의 여러 제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입학과 졸업 제도를 비롯해 교수 기능에조차 국가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우리의 파행적인 행정 질서에 따른 정치적 혼란 상황과 관련하여 정통적인 대학교수의 교수 기능과 연구 기능 이외에 이른바 지도 기능이 일반적으로 부과됨으로써 국가기관의 대학에 대한 간섭은 크게 심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사립대학은 설립자 개인의 전유물처럼 존속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자치와 대학교수의 자율과 권한은 거론할 여지조차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또한 교수의 학술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물질적 시설과 보상 제도 역시 미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급격한 대학의 양적 확대는 이러한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1963년에 만들어진 영국의 로빈스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의 자율이란 ① 교수의 임면, ②

교육과정과 학적 기준, ③ 학생의 입학, ④ 교수와 연구 기능의 균형, ⑤ 대학발전계획, ⑥ 교수의 보수 및 부담(교수와 학생의 비율) 등에 관한 제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 대학의 자주적 판단과 자율적 행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의 자율이란 대학의 자치를 뜻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자치는 전통적으로 우선 교수회의 자치로 파악해 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학의 자치를 학생의 자치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으나 대학 자치의 주체는 교수나 기타 연구자이고, 학생은 그 조직체가 제공하는 역무의 이용자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일단 교수회의 자치로 규정해 놓기로 한다면 대학 자치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교수회에 의한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학의 자치 기구로서의 교수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의 인사가 교수회의 자주적 판단에 의해 행해지고 대학의 시설 및 학생의 관리도 교수회의 주체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학 자치의 이상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조차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혹 교수회를 제도화해 놓았다 할지라도 의결 기구가 아니라 심의 내지 자문 기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학의 자치와 현존하는 우리 대학의 교수회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 대학 자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대학 인사의 독립이라고 할 때 교수회의 판단에 의해서 대학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우리의 경우는 그것 자체가 법에 의해 제약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사립학교의 장에 대한 승인 취소를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극히 포괄적인 조건 아래서 행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의 장은 교수회와 상관 없이 재단이사회에서 선출되고 있으며, 설립자의 주종 세력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설립자의 직계비존속이나 설립자의 의종의 인물을 학교의 장으로 선출하는 일종의 합법화된 변형 세습제를 따르고 있다.

생각컨대 국가기관의 대학에 대한 통제도 전적으로 관권의 일방적인 간섭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기업체로 화하여 학생의 등록금으로 수지를 맞추어 운영해 왔고, 기업화한 사학재단이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 분규를 거듭해 온 사실들이 대학에 대한 공권력의 통제를 유발한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립대학의 구조에서 정책 결정에 대학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 대학의 설립자를 중심으로 한 즉벌 체제는 이미 사회의 규탄을 받은 바 있다. 대학의 목표들이 대학이라는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분명히 이해되고 합의를 이루는 관행이 무시되어 온 풍토에서 대학의 자율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대학은 본래 교수와 학생의 길드로서 출발되었으며, 교수는 대학이라는 학문공동체의 주체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학생들에 있어 단순히 인생을 훈련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그 자체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기대의 균열은 대학의 위기마저 조성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에 의해 이른바 '비적대적 모순 관계'로 규정되는 오늘의 교수와 학생과의 사이는 그 자체가 교권의 토대를 위협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양심 테스트를 받아야만 하는 교수의 위상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의 축도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수의 교권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스런 고민일지도 모르겠다.

*